

# 경쟁정책과 국제협력

## - Global Hard Core Cartel에 대한 경쟁법 고찰 -



정영화  
서경대 조교수

경쟁정책은 효율성과 필요성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의 적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카르텔의 조사와 포착은 종래의 무역과 금융 및 관세 등의 관련 기업의 정보를 면밀하게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한다.

### I. 서론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개별국가로 유입되는 카르텔 상품이나 단기자본(hot money)<sup>1)</sup>이 그 시장 경제질서를 교란하여 해당 국가 GDP의 10% 정도를 약탈하는 국제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기자본은 금융시장의 환율 및 금리 차이를 노리고 일시에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혼란시키거나 또는 통상적인 교역의 형태를 떠 면서 재화나 서비스 거래의 자금결재의 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개별 국민경제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

제무역거래에 관한 정보공유와 국제협력의 강화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민경제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conduct)의 해악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만약 개별 국가의 경쟁당국이 법적 관할권의 제한이 없다면, 국제적인 경쟁저해행위의 조사와 규제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 상호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쟁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적 관할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긴요한 과제이다. 사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경쟁당

1) 단기의채(BIS기준)는 통상 만기 1년 이하의 외채로 칭하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은 본래 차입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잔여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외채 또는 세계은행(world bank)은 차입약정기간이 1년 미만의 외채로 정의한다. IMF, Finance & Development, 2000.12 참조.

국은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해치는 외국기업이나 사업자의 경쟁저해행위를 적법하게 규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가의 경쟁당국은 행위 자체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면 경쟁저해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어떤 경쟁당국자는 “세계화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나, 경쟁당국은 일정한 형태의 상호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경쟁저해행위의 규제목적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공언하였다.<sup>2)</sup>

한편, 세계시장의 경쟁저해행위로서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은 이전에 비해서 세계경제(global economy)에 훨씬 더 지배적이고 유해한 결과를 낳고 있다. OECD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f the OECD Council related to Competition law and Policy)(1998. 4)는 경쟁자들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공급제한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없거나, 또는 부당하게 고가로 구입해야만 하는 명백한 경쟁저해행위로서 ‘경성카르텔’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카르텔 사업자들이 가격담합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왜곡시키고,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국민경제의 자원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거래에서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쟁업자들간의 가격담합(price fixing) 또는 다른 경쟁저해행위의 약정에 대한 국제협력과 경쟁법의 개선방안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 II.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에 대한 경쟁법의 대응

OECD 회원국들은 현재 정치경제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또 그 정부들은 초국적 거대기업들의 경성카르텔에 의한 경제력 남용으로부터 경쟁법의 집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긴급한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경쟁법을 운용하는 50여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제카르텔은 개발도상국가에는 그 해악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유효한 반카르텔(anti-cartel)의 규제수단을 갖춘 국가들이 설령 그의 예외가 될지라도 다른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래 경성카르텔이란 경쟁사업자들이 가격담합(price fixing), 출고제한(restrict output), 담합약정, 시장분할 또는 시장공유의 경쟁저해행위를 말한다. 1998년 OECD 권고에서 이 카르텔을 가격인상이나 그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제한에 의해서 다수의 소비자가 전혀 물품을 구입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해한 반경쟁행위(per se illegal)이다.<sup>3)</sup> 이로 인해서 회원국들은 각기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법 개정과 집행수단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강력한 경쟁법을 시행하는 국가로서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과 한국 등이 있다. 한국은 중

2) Hank Spier,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he Perspective of the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Seminar on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Taipei, 2 May 1997, p.6.

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Effective Action Against Hard Core Cartel(제921차 Council 회의에서 채택, 1998. 3. 25).

경쟁정책과 국제협력

래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의 카르텔 면제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벌금액을 상향시켰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독점금지법에서 중전의 카르텔 면제조항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캐나다는 새로운 집행수단으로서 도청과 경고(whistle-blowers)제를 시행하고, 또한 독일은 형벌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였다. 이미 회원국 중 9개국은 경성카르텔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법 개정을 하였는데, 스웨덴의 경쟁당국도 최근에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더구나 뉴질랜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거액의 벌금과 최고액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경성카르텔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경성카르텔 행위를 형사범으로 기소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최초로 국제 카르텔 사건을 제소하였다. 미국은 여러 가지 국제카르텔 사건들에 대해서 형사기소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특히 동일한 사업자의 상이한 회원국에서의 카르텔 시도에 대해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포함, 회원국마다 각기 벌금을 부과한다. 아일랜드는 카르텔을 가장 유해한 공공의 적대행위로 선언하고, 최근까지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민·형사 사건으로 규제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카르텔 사건이 국제거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카르텔을 처벌하고 있다.

한편, 효과적인 반카르텔(anti-cartel)제한의 중대한 취약점은 대부분 정부의 공무원과 입법자, 공공기관이 카르텔로 인해서 초래되는 해악의 규모와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의 부족을 해소하는데는 회원국간의

정보공유와 대응조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만 최근 국제적인 카르텔 행위로서 10건이 기소되었다. 이들은 매년 개인과 기업에게 수억 달러의 비용부담을 주었고, 미국 상거래 매출의 100억 달러 이상 영향을 주는 동시에 10억 달러 이상을 소비자나 구매자에게 초과 부담시킴으로서 그 만큼 경제적 자원낭비를 초래하였다.<sup>4)</sup> 모든 카르텔이 세계에 미치는 해악은 미국의 10건의 사례와 함께 미국 역외에서의 국제카르텔 및 국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국내카르텔, 그리고 적발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는 다수의 카르텔로 인해 현저히 증대될 것이다. 그러한 카르텔의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대한 세계경제의 고갈(drain)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III. 경성카르텔 사건유형과 경쟁정책의 과제

#### I. Hard Core Cartel 사건유형

세계시장이 왜곡된 현실은 최근 국제카르텔을 주도한 자들의 생생한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비밀회합에서 “우리의 경쟁자들은 친구이고, 우리의 고객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근년에 회원국의 경쟁당국이 반경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서 수 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저지할 수 있었다. 불과 수년 전부터 밝혀진 국제카르텔로 미국 안에서만 개인 소비자와 구매기업들이 연

4)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의 10억 달러(추정)는 미국 법무성이 관련시장의 상거래에서 100억 달러에 대해서 평균 10%의 가격인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 평가한 것이다.

간 수억 달러의 소비지출을 부담하였다. 연간 세계 전체 초과비용의 부담액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엄청나게 높은 비용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많은 국제 및 국내카르텔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또 그의 포착이나 입증이 매우 곤란하다. 현재까지도 대다수 경성카르텔들이 발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에 포착되거나 입증된 국제카르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 (1) 세계 전기(절연탄소) 카르텔(The Global Graphite Electrodes Cartel)

이 사건은 세계적인 전기절연탄소(graphite electrodes)의 주요 제조업체 거의 대부분이 5년간(1992~1997) 미국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유럽에서의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가격담합에 참여하여 유죄로 선고되었다. 미국에서 6개 기업들은 3억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3명의 개인들은 기소되어 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9개월에서 15개월에 걸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카르텔은 미국에서의 거래만으로 17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미국에서 1992년 당해 상품가격이 0.95달러/배럴에서 1997년에는 1.56달러/배럴로 무려 60% 이상 인상되었었다. 미국 시장규모는 그 재화의 전세계 매출의 1/4 내지 1/3 정도 점유하고, 그 카르텔은 세계시장매출에서 50억~70억 달러 정도 관련된 것이다.

### (2) 라이신 카르텔(The Global Lysine Cartel)

이 사건은 가축사료 첨가물인 라이신(lysine) 시장에 관련된 하드코어(hard core) 카르텔이다. 최근의 카르텔 사건과 비교할 때, 연간 6억 달러의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 명의 피고를 유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드문 일지만,

국제카르텔의 실상과 그 운용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이 그들을 기소하는데 사용한 증거는 공공기록이다. 라이신 카르텔은 그 참가자가 통상의 경쟁과정을 선도하여 3년 동안 라이신의 세계가격이 두 배로 인상되었다.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서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경쟁한다. 라이신 카르텔은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 5사 전부가 미국,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일본, 한국, 멕시코 및 태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계의 판매량과 엄격한 담합가격인 0.01달러/파운드를 정하였고 담합에 의해서 카르텔은 세계 매출이 14억 달러 이상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이로써 미국에서만 1억 4천만 달러의 초과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담합 초기 3개월간 가격이 70%로 상승하고, 유명한 피고인 Archer-Daniels-Midland는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또한 라이신 카르텔에 참여한 다른 기업들도 2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캐나다에서는 전체 라이신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 1,75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영국에서는 라이신 담합이 최초의 국제카르텔 사건으로서 그 참가기업의 계열회사를 경쟁제한 법원(Restrictive Practice Court)에 기소하였다.

### (3) 프랑스 TGV 카르텔(The French TGV Cartel)

프랑스 경쟁당국은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독점이윤의 확보를 시도한 가격담합 사건을 성공적으로 중지시켰다. 이 사건의 카르텔 참가자는 국내기업이며, 외국기업이 경쟁입찰에서 위협받기 때문에 국제경쟁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 카르텔은 건설사업의 일부에 입찰하고,

경쟁정책과 국제협력

동시에 그 사업의 다른 부분에 입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최고 7,500만 프랑까지 해당 기업에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해 기업이 그 수령을 거부하고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면, 담합기업은 그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서 2차로 낙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하였다. 그 사건이 발각되어 3억 7,800만 프랑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외국기업 배제를 위한 750만 프랑의 지급 제안은 담합기업의 예상 독점이익의 수준에 위협을 주었다.<sup>5)</sup>

**(4) 스페인 설탕 카르텔(The Spanish Sugar Cartel)**

스페인 경쟁당국은 스페인의 설탕 제조업 4사가 가담한 카르텔 사업자를 기소하였다. 기업들은 가격담합, 시장분할약정, 판매량 할당, 수·출입 약정 그리고 최대한의 독점이익을 얻기 위해서 설탕공급을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설탕가격은 수년동안 유럽의 다른 지역의 가격보다 5~9% 정도가 높았다. 수백만 유로화(euros)의 높은 가격과 다른 해약-제조원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싼 설탕가격으로 인해서 수출 감소-은 평가할 수 없었다. 네 제조업체 모두에게 870만 유로화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 사건은 카르텔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유해한 '파급효과'(ripple effect)를 초래하여 판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국내카르텔은 다른 스페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5) 세계 비타민 카르텔(The Global Vitamins Cartel)**

카르텔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일정한 비타민 판

매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s)을 할당하고 또 가격담합에 의해서 카르텔을 시행하는데 수백만 달러와 수 천명의 노동력을 소모하였다. 미국에서 이 카르텔 사건에 대한 벌금은 미화 1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미국 규제당국에 협조한 Rhone Poulence사는 벌금이 면제되었고, Hoffman-LaRoche사와 BASF사는 7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3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Roffman-LaRoche사의 두 임원은 미국에서 유죄선고로 4월과 5월의 징역과 상당한 벌금형에 처하여졌다. 미국에서 벌금의 최대한도는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내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2배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카르텔 사업자들은 가격인상으로 5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캐나다는 이 사건의 해당 기업에 대해서 8,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2. 경쟁정책의 과제**

OECD 권고에 따라서 반카르텔(anti-cartel) 조치에 대한 유효성의 제고가 실제로 회원국의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요하다. 그래서 경쟁당국의 지속적인 반카르텔 조치는 성공적으로 다수의 국내외의 경성카르텔을 저지하고 또 처벌하였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긴급한 과제에 대한 5가지 쟁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카르텔의 초과비용 부담과 다른 해약의 정도, 둘째, 카르텔 사건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제한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파급효과, 셋째, 카르텔 사건에서 적절한 협력, 넷째, 카르텔 사건에 대한

5) Decision No. 95-D-76 여 Conseil de la concurrence, on 29 November 1995 on Procurement Market(Conseil de la concurrence, 9th Annual Report, 1995, annex 83, p.563)

적정한 조사수단, 다섯째, 카르텔 사건에서 적절한 제재이다.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반카르텔 조치가 보다 유효하려면 심각한 장애요소인 정보부족(knowledge gap)을 극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각국 간의 카르텔의 해약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공개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효율적인 협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요인들을 공개함으로써 카르텔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나머지 과제들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회원국의 경쟁정책의 차이를 인정하는 한편, 회원국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적합한 행위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국 국제카르텔의 규제방안은 국가의 카르텔의 법 집행 조치와 정보공유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가에 달려있다.

### 3. 정보공유와 법 집행의 협력방안

회원국의 경쟁법들이 경성카르텔의 정의에 대해서 경쟁자간에 가격담합(price fixing), 입찰 부정(bid rigging), 생산제한(output restriction), 및 시장분할(market division)의 반경쟁적인 약정의 네 가지 범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회원국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의 규정과 그 해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데 이는 경성카르텔은 발견하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쟁당국 간의 협조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으나, 경성카르텔 조사에서의 협조요청은 대개 조사지원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사지원의 형태는 필요하면 강제절차에서 다른 경쟁당국에게 대신 정보수집을 요청하거나 또는 협력하는 경쟁당국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과일형태의 공개 또는 비공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수의 특수한 관계와 상황을 제외하고, 어느 경쟁당국도 외국기관을 대신하여 정보수집에서 강제절차를 이용하는 사법기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공개의 기업정보를 공유하지도 않는다. 대다수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비공개의 일반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 수많은 경쟁당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카르텔에 대해서 조사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는 전통적으로 대다수 경쟁당국이 전적으로 국내의 경쟁제한에만 초점을 두었던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면으로 현재 세계화의 경제통합의 추세 속에서 개별 국가의 경쟁당국들은 점차 국제적인 법 집행과 국제협력에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과 정보의 수집 및 공유에 대한 법적 제한이 유효한 국제협력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쟁당국의 입장은 다른 제재와 실체법 및 절차법의 상이함과 관련하여 폭넓은 정책적인 문제로 이해하였다. 실제 유럽연합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서 개별 경쟁당국 상호간에 협력을 증대하고, 또 법 집행의 분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명백하다. 즉 다수의 국가들이 최소한의 정보공유와 분석이 없이 동일한 행위를 조사할 경우에는 전체 조사비용이 납세자나 해당 기업과 제3자들에게 보다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에 있는 증거를 독자적으로 수집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회원국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보다 유효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에

경쟁정책과 국제협력

장애가 되고 또 단독의 정보수집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이상으로 각국의 경쟁당국은 카르텔에 대한 사실조사가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국익보호를 위해서 양자조약이나 협정이 필요하다. 물론 경쟁당국은 경성카르텔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행위나 기업합병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도 정보공유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기초한 접근방식은 다수 경쟁당국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V. 결 어

오늘날 무역투자의 자유화(liberalization)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장기간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무역에 의해서 판매자는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또 선택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렴하고, 양질의 재화와 보다 유리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계화는 이것과 동일한 경제적 성과 반영, 비용감소에 의한 기술집약, 모든 국가에 대한 잠재적 이익을 보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기업들이 낮은 비용의 국외기업이나 신규진입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경제가 붕괴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개발도상국이나 이행경제의 후기 사회주의국가와 같이 시장경제의 여건에서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기업이 실패할 때에는 전체 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적절한 작동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의 틀이 결여되어서 더 빨리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세계화는 모든 국가의 공동문제로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쟁정책이 대규모 기업지배 또는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대체되는 사회정책 정도로 오해하는 세계화의 관념에 기초한 국제카르텔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화의 이익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경쟁법과 다른 보호조치를 전제 하되, 지배기업의 경제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요컨대 경쟁정책은 효율성과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의 적용이 중요하다.<sup>6)</sup> 따라서 국제카르텔의 조사와 포착은 종래의 무역과 금융 및 관세 등의 관련 기업의 정보를 면밀하게 수집 및 분석하여야 한다. 경쟁당국은 국내 및 해외의 경성카르텔에 대한 규제수단을 보다 강화하되, 중대한 국제적인 경제범죄로서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또는 피해액의 3배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행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정**

6) 정영하, 현대 경제법 원론(경제규제의 법이론), 다산출판사, 2001(군간), 서론, 참조.